

주물작업장 중자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성별	여	나이	48세	직종	중자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조 ㅇ ㅇ (48세, 여)는 1983년 5월부터 주물사업장 중자부에 근무하던 중 2000년 4월 조직검사에서 폐에 혈행성 및 림프성 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 결절소견을 보이는 폐 암(원발부위 모름)을 진단받고 치료 중 5월 26일 사망하였다.

2 작업화경

조 ㅇ ㅇ 는 약 17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중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중자실이 다른 부 서와 격리되어 있어 다른 부서에 비하여 주물사 분진의 양은 높지 않아 1998년 0.17 mg/m³, 1999년 0.50mg/m³이었다. 그러나, 일일 작업중 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아 유 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중자실과 인접하여 있는 수동탈사 공정의 분진농도가 매우 높아 거의 매년 허용농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적으로는 상당량의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조 ○ ○ 는 1990년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2000 년 4월 호흡곤란이 있어 개인의원에서 치료받다가 C대학병원에서 혈행성 및 림프성 전이가 의심되는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발병 50일만에 사망하였다. 1998년부터 보관된 흉부엑스선사진에서 이상소견은 없었고 발병 4개월 전의 흉부사진도 정상이었다. 외부 대학병원의 판독소견도 일치하였다. 방사선 검사로는 원발부위를 확인할수 없으나 혈행림프성 전이소견을 보아 위장관계에서 전이된 폐암으로 추정되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원발암 부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 \circ \circ 는 흡연력은 전혀 없었다.

4 결 론

조 ㅇㅇ의 폐암은

- ① 만일 원발성 폐암이라면 비흡연자이고 17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며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 ② 원 발생 부위를 알지 못하는 전이성 폐암이고
- ③ 혈행 림프성 전이성 폐암으로 타 부위에서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과 폐에서 발생하여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으며, 방사선사진 판독소견도 전문의사간에 원발부위 추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이라고 확인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주물작업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